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, 위원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금융위원회위원장 ·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·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함(안 제10조).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이에 필요한 시설 · 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함(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으로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¹⁾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”을 추가하고 있는데, 제1호 및 제3

1) 제182조(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,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.

1. 시·도지사
2. 시·도의회 의장
3.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
4.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

호의 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사람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
각 협의체가 별도로 추천한다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 법 제10조는 제5항에서 제2호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
있으나, 개정안은 제3호의 위원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
보완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마련함.

개정안	수정의견
제10조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)	제10조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)
④ (생 략)	④ (생 략)
1. (생 략)	1. (생 략)
2.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 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 지·교육·지역개발 분야에 풍 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 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	2. (개정안과 같음)
3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 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 립된 협의체가 <u>추천하는</u> 사 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	3. ----- ----- ----- <u>각각 추천하는</u> ----- ----- -----
⑤ <u>제4항제2호</u>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	⑤ <u>제4항제2호 및 제3호</u> ----- -----

- 그 밖에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최 기 도)